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3. . . (제 회)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제출 연월일	20 .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백제왕도 핵심유적의 보존·관리 강화를 위하여 문화재청에 2025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백제왕도핵심유적보존·관리사업추진단을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5명(4급 1명, 5급 3명, 7급 1명)을 한시적으로 증원하고, 조선왕조실록·의궤 등 문화유산의 보존관리 강화를 위하여 국립고궁박물관 소속으로 국립조선왕조실록박물관을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4명(6급 1명, 연구관 1명, 연구사 2명)을 증원하는 한편,

범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활용 정원제 운영 계획에 따라 국정과제·정책현안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문화재청의 정원 3명(6급 1명, 7급 1명, 9급 1명)과 국립무형유산원의 정원 1명(연구사 1명)을 감축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2023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

다. 합 의 : 기획재정부, 문화재청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정원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12.31. ~ 12.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장에 제2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2(국립조선왕조실록박물관) ① 조선왕조실록 및 의궤의 보존 관리·조사·연구·전시 및 교육을 수행하기 위하여 국립고궁박물관장 소속으로 국립조선왕조실록박물관을 둔다.

② 국립조선왕조실록박물관에 관장 1명을 두되, 관장은 연구관으로 보한다.

제38조의 제목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추진단)”을 “(신라왕경 핵심유적복원·정비추진단)”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 추진단”을 “신라왕경핵심유적복원·정비추진단”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를 “신라왕경핵심유적복원·정비”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4항 중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 추진단”을 각각 “신라왕경핵심유적복원·정비추진단”으로 한다.

제3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9조(백제왕도핵심유적보존·관리사업추진단) ① 문화재청 문화재 보존국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제1항 제1호에 따라 2025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백제왕도

핵심유적보존·관리사업추진단을 둔다.

② 백제왕도핵심유적보존·관리사업추진단에 단장 1명을 두며, 단장은 4급으로 보한다.

③ 백제왕도핵심유적보존·관리사업추진단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백제왕도 핵심유적 보존·관리 기본계획의 수립·변경
 2. 백제왕도 핵심유적 보존·관리 사업의 총괄·조정
 3. 백제왕도 핵심유적 보존·관리 사업 관련 기초 조사·연구
 4. 백제왕도 핵심유적 보존·관리 사업 관련 각종 기술지도 및 현장점검
 5. 백제왕도 핵심유적 보존·관리 사업을 위한 대외협력
 6. 백제왕도 핵심유적 관련 교육 및 홍보
 7. 백제왕도 핵심유적 보존·관리 사업과 관련된 법인 지도·감독
 8. 백제왕도 핵심유적 보존·관리와 관련된 학술대회, 세미나, 발표회 및 공청회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백제왕도 핵심유적 보존·관리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④ 백제왕도핵심유적보존·관리사업추진단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4와 같다.

⑤ 별표 4의 직급별 정원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별표 1 중 총계 “289”를 “286”로 하고, 일반직 계 “288”을 “285”으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277”을 “274”로 한다.

별표 2 중 총계 “236”을 “239”로 하고, 일반직 계 “189”를 “192”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182”를 “185”로 한다.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9조 및 별표 4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문화재청의 정원 3명(6급 1명, 7급1명, 9급 1명)과 문화재청 소속기관의 정원 1명(연구사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문화재청과 그 소속 기관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별표 4]

문화재청 한시조직에 두는 공무원 정원표
(제38조제4항 및 제39조제4항 관련)

1. 신라왕경핵심유적복원·정비추진단(존속기한: 2025년 8월 9일)

총계	4
일반직 계	4
4급 이하	4

2. 백제왕도핵심유적보존·관리사업추진단(존속기한: 2025년 12월 31일)

총계	5
일반직 계	5
4급 이하	5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제38조(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 · 정비추진단) ① 문화재청 문화재 보존국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 제1항제1호에 따라 2025년 8월 9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 · 정비 추진단을 둔다. ②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 · 정비 추진단에 단장 1명을 두며, 단장은 4급으로 보한다. ③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 · 정비 추진단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9. (생략) ④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 · 정비	제20조의2(국립조선왕조실록박물관) ① 조선왕조실록 및 의궤의 보존 관리 · 조사 · 연구 · 전시 및 교육을 수행하기 위하여 국립고궁박물관 관장 소속으로 국립조선왕조실록 박물관을 둔다. ② 국립조선왕조실록박물관에 관장 1명을 두되, 관장은 연구관으로 보한다. 제38조(신라왕경 핵심유적복원 · 정비추진단) ① ----- ----- ----- ----- ----- 신라왕경 핵심유적복원 · 정비추진단-----. ② 신라왕경 핵심유적복원 · 정비 ----- -----. ③ 신라왕경 핵심유적복원 · 정비 추진단-----. 1. ~ 9. (현행과 같음) ④ 신라왕경 핵심유적복원 · 정비

추진단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4와 같다.

⑤ (생략)

<신설>

추진단-----
-----.

⑤ (현행과 같음)

제39조(백제왕도핵심유적보존·
관리사업추진단) ①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
7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2025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
으로 백제왕도핵심유적보존·
관리사업추진단을 둔다.

② 백제왕도핵심유적보존·관리
사업추진단에 단장 1명을 두며,
단장은 4급으로 보한다.

③ 백제왕도핵심유적보존·관리
사업추진단은 다음 사항을 분장
한다.

1. 백제왕도 핵심유적 보존·관리
기본계획의 수립·변경

2. 백제왕도 핵심유적 보존·관리
사업의 총괄·조정

3. 백제왕도 핵심유적 보존·관리
사업 관련 기초 조사·연구

4. 백제왕도 핵심유적 보존·관리
사업 관련 각종 기술지도 및
현장점검

5. 백제왕도 핵심유적 보존·관리
사업을 위한 대외협력

6. 백제왕도 핵심유적 관련 교육
및 홍보

7. 백제왕도 핵심유적 보존·관리
사업과 관련된 법인 지도·감독

8. 백제왕도 핵심유적 보존·관리와
관련된 학술대회, 세미나, 발표회
및 공청회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백제왕도 핵심유적
보존·관리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백제왕도핵심유적보존·관리
사업추진단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4와 같다.

⑤ 별표 4의 직급별 정원은 문화
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신 · 구 정원 대비 표

[별표 1]

문화재청 공무원 정원표(제34조제1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계	.		.		.		
			<u>289</u>		<u>286</u>	-3	
일반직	.		.		.		
계	.		.		.		
			<u>288</u>		<u>285</u>	-3	
	.		.		.		
	.		.		.		
3급 또는 4급 이하			<u>277</u>		<u>274</u>	-3	
	.		.		.		

[별표 2]

문화재청 소속기관 공무원 정원표(제35조제1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	정	안	증	감
총계	.		.		.				
			<u>236</u>		<u>239</u>			+3	
	.		.		.				
	.		.		.				
일반직 계			<u>189</u>		<u>192</u>			+3	
	.		.		.				
3급 또는 4급 이하			<u>182</u>		<u>185</u>			+3	
	.		.		.				
	.		.		.				

< 의안 소관 부서명 >

행정안전부 사회조직과	
연 락 처	(044) 205 - 2363